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35호 2021. 7. 15.(목)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409호 사천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개정규정 --- 1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191호 도시재생 선도사업 『바다마실, 삼천포愛 빠지다』 활성화 계획 변경 고시 ----- 20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904호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5
- 사천시 공고 제918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3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사천시 훈령 제409호

사천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7월 1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개정규정

사천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사천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시장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소속 구성원(시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사천시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14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2차 피해 포함)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 관리·감독 강화) ① 시장은 사천시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 발생 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원의 책무) 사천시 소속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와 소속 직원의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업무 담당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인사 또는 감사 담당 공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게시판과 게시물로 같음할 수 있다.

제8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8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8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8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1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시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을 접수할 경우 즉시 여성가족부 ‘공공 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피해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⑨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인사·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성희롱·성폭력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위원

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천시지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⑦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시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회의 소집 시 위원장은 위원에게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시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 등 결과 통지) 시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시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재발방지 조치 등)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있다.

③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7. 15.>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명	소속부서				고 충 상담원	부서장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7. 15.>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사천시 고시 제2021-191호

도시재생 선도사업 「바다마실, 삼천포愛 빠지다」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8-144호로 고시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바다마실, 삼천포愛 빠지다』의 활성화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사 천 시 장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 (변경없음)

사업유형	중심시가지형			
사업명	바다마실, 삼천포愛 빠지다			
위치 및 면적	삼천포구항 일대 / 291,829㎡			
사업기간	2018 ~ 2022 (5년간)			
총사업비	1,686억원 (국비 150억원, 지방비 100억원, 부처연계 1,300억원, 지자체 136억원)			
비전	바다를 머금은 삼천포의 옛 정취 회복을 통한 재생 “바다마실, 삼천포愛 빠지다”			
목표	자연경관의 회복	무형적 자산의 회복	어촌문화의 회복	공동체 공간의 회복
핵심 콘텐츠	열린 해안 공간 재생 삼천포구항 자연환경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안 경관의 회복 및 보행 접근성 향상	콘텐츠 특화 상권 재생 바다낚시, 축제 등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 무형적 자산의 체험 콘텐츠 개발	경관마을 주거 재생 어항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매력의 창출	마을 경제 공동체 재생 구도심의 문화공간, 공동체 공간의 구성을 통한 지역 주민과 상인의 자생적 활동 공간 조성

사천 시 공 보

제 735 호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가. 총괄계획도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 위 총괄계획도는 참고용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나. 세부 사업계획

□ 경상남도 사천시(중심시가지형) (변경)

구분	사업명	사업비(억원)		사업내용	변경내용
		당초	변경		
총 합계		1,686	1,686		
마중물 사업	소 계	250	250		
	'블루웨이' 통합경관 조성	27.20	27.20	·해안 보행로 조성	경로 변경
	삼천포전통수산시장 공간개선	16.62	16.62	·재래시장 환경개선	유지
	바다조망테라스'바라보소'	14.04	14.04	·옥상공원 조성	유지
	방파제파도공원	20.47	20.47	·조망 및 휴게공간 조성	유지
	어시장 특성화	9.27	9.27	·재래시장 환경개선	유지
	시장지원 거점 조성	12.14	2.14	·상인 및 소비자 서비스 공간	위치 및 사업비 변경
	복합공간'지혜의 바다'	22.62	32.62	·복합 문화 공간 ·복합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위치 및 사업비 변경
	청년문화에비뉴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2.5	2.5	·청년문화 에비뉴 ·가로환경개선	유지
	인포메이션 거점 조성	5.23	5.23	·관광안내센터 설치 ·관광 활성화 추진 사업 ·삼천포 항만진입공간 공모 추진 ·관광안내센터 운영지원	유지
	문화오름 설치	38.61	38.61	·문화오름 설치	유지
	삼천포 커뮤니티 에코주차장	40.68	40.68	·에코주차장 신축 ·통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	유지
	복합교류공간 '7004' 조성	8.50	8.50	·복합교류공간 조성	유지
	청닐공원 주민거점화	9.22	9.22	·외부 휴게공간 및 놀이 시설 조성 ·풍차 리모델링	유지
	도시재생역량기반구축사업	22.9	22.9		유지
	부처 협력 사업	소 계	1,300	1,300	
삼천포구항 통방파제 해수유통구 설치		51.0	51.0		유지
케이블카 주변 경관림 조성		93.0	93.0		유지
간판정비사업		2.0	2.0		유지
바다케이블카 조성		600.0	600.0		유지
노산공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68.0	68.0		유지
도서종합개발(특수상황지역)사업		218	218		유지
삼천포 생태하천 복원사업		168.0	168.0		유지
삼천포옹궁수산시장 주차장 조성		100.0	100.0		유지

사 천 시 공 보

제 735 호

지자체 사업	소 계	136.0	136.0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7.0	7.0	유지
	도시재생 주차공간 확보	15.0	15.0	유지
	사천바다케이블카 운형대비 도시계획도로 확장	27.0	27.0	유지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지원	20.0	20.0	유지
	바다케이블카 연계 관광상품 개발	15.0	15.0	유지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 및 디자인 개발	2.0	2.0	유지
	전문가 등 수당,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10	10	유지
	청년문화에비뉴(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청년문화에비뉴구성, 설계 및 감리비	25.50	25.50	유지
	'파랑마을'정비사업	14.50	14.50	유지

※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도시재생 재정보조(마중물)사업 변경 전/후 비교표

구 분	기존 계획(안)	계획 변경(안)	비 고
A-1 '블루웨이' 통합경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 보행로 조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닐공원 ~ 삼천포구항 ~ 노산공원 까지 연결하는 바다조망형 항만연결길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바다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데크 조성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닐공원에서 등대까지 연결 보행데크 조성 (전구간 약 1.7km) - 1구간 : 500m 해안경찰서 삼천포출장소 ~ 수협 - 2구간 : 400m 삼천포 전통수산시장 ~ 용궁 수산시장 주차장 진입로 - 3구간 : 800m 해양경찰서 사천파출소 ~ 방파제 파도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 보행로 조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닐공원 ~ 삼천포구항 ~ 노산공원 까지 연결하는 바다조망형 항만연결길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바다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데크 조성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닐공원에서 등대까지 연결 보행데크 조성 (전구간 약 1.71km) - 1구간 : 460m ▷ 1구간-1: 유람선길(L=270m, B=1.5m) ▷ 1구간-2: 어시장길(L=190m, B=6m) - 2구간 : 340m 삼천포 전통수산시장 ~ 용궁 수산시장 주차장 진입로 구간 60m 축소 - 3구간 : 910m 해양경찰서 사천파출소 ~ 방파제 파도공원 구간 260m 축소 : 540m 우회산책로(L=370m, B=2m)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루웨이 경로 변경 ▷해안 보행로 1,700m → 1,710m (증, 10m) - 1구간 : 500m → 460m (감, 40m) - 2구간 : 400m → 340m (감, 60m) - 3구간 : 800m → 910m (증, 110m)

사 천 시 공 보

제 735 호

<p>B-2 시장지원 거점 조성</p>	<p>◦상인 및 소비자 서비스 공간 ·내용 - 시장 중심부 휴식과 이동시설 연결을 지원하는 공간 조성 - 삼천포구항 케이블카 등 관광거점간 연계를 위한 티켓판매 및 안내기능 수행 사천 바다케이블카 ~ 수산시장 ~ 인포메이션 거점 구간 셔틀버스 운행 ·규모 건축을 철거 및 열린공간 조성 - 조성면적 : 500㎡ ▷상인 및 소비자 서비스공간 / 광장 : 조성면적 500㎡</p>	<p>◦상인 및 소비자 서비스 공간 ·내용 - 시장 중심부 휴식과 이동시설 연결을 지원하는 공간 조성 - 삼천포구항 케이블카 등 관광거점간 연계를 위한 티켓판매 및 안내기능 수행 사천 바다케이블카 ~ 수산시장 ~ 인포메이션 거점 구간 셔틀버스 운행 ·규모 삼천포 커뮤니티 예코주자창 및 주변 공간을 활용 - 조성면적 : 720㎡ ▷관광객, 주민, 상인서비스공간 : 휴게 및 안내소 120㎡ : 광장 : 600㎡</p>	<p>·시장지원 거점 조성 (부지, 사업비 변경) ▷서동 314-80번지 일원 → 서동 321-1번지 일원 ▷부지면적 : 500㎡ → 720㎡ (증, 220㎡) ▷사업비 : 1,214백만원 → 214백만원 (감, 1,000백만원)</p>
<p>B-3 복합문화공간 '지혜의 바다'</p>	<p>◦복합 문화 공간 ·내용 - 지역자원인 부다가 공장을 리모델링 - 복합문화공간, 공유주방 조성 문화공간 / 음식공유공간 / 마을목공소 조성 : 연면적 600㎡ ·위치 - 선구동 58-43번지 외 3필지 (A=584㎡) ◦복합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내용 -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유공간 ·규모 - 기획자 선발 및 운영 (3년)</p>	<p>◦복합 문화 공간 ·내용 - 신축에 의한 공간조성 - 복합문화공간 및 공유주방 조성 문화공간 / 음식공유공간 / 마을목공소 조성 : 연면적 600㎡ ·위치 - 서동 311-10번지, 311-40번지, 311-42번지(3필지) (A=306㎡) ◦복합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내용 -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유공간 ·규모 - 기획자 선발 및 운영 (3년)</p>	<p>·지혜의 바다 (부지, 사업비 변경) ▷선구동 58-43번지 외 3필지 → 서동 311-10번지 외 2필지 ▷부지면적 : 584㎡ → 306㎡ (감, 278㎡) ▷연면적 : 600㎡ (변동없음) ▷사업비 : 2,262백만원 → 3,262백만원 (증, 1,000백만원)</p>

4. 도시재생 선도사업 「바다마실, 삼천포愛 빠지다」 열람안내

- 열람기간 : 2021.7.15. ~ 2021.8.13.(30일간)
- 열람장소 : 사천시청 도시재생과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천시 도시재생과(055-831-31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사천시 공고 제2021- 904호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1.6.8.)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제1항, 안 제16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 나.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청(참조 : 토지관리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20, FAX : 831-6929)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으로,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을 “제43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영 제49조제2항”을 “영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을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9호) 중 “영 제59조”를 “영 제53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10호) 중 “영 제64조제1항제1호”를 “영 제52조제1호”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제16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p>	<p>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제43조제5항-----</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위탁) ① -----</p> <p>-----</p> <p>-----</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영 제40조제2항-----</p> <p>-----</p> <p>-----</p> <p>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p> <p>-----</p> <p>-----</p>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
흥에 관한 사항

②·③ (생략)

제17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
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
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
다.

10. 영 제53조-----

9. 영 제52조제1호-----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관 련 법 규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사물주소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형, 지역의 여건 및 설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주소판의 설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물주소판을 관리해야 하며, 사물주소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받아 부착·설치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도에는 시·도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군·구에는 시·군·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918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21.4.12.)와 관련하여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와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규정 삭제(안 제7조 제4호)
- 나.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의 국외연수 지원 규정 삭제(안 제7조제8호)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81, FAX : 831- 6021)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을 “순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적용범위) ①·② (생략)</p> <p>③ <u>시장</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④ (생략)</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u>시장</u>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품 지급</u></p> <p>5. ~ 7. (생략)</p> <p>8. <u>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의 국외연수 지원</u></p> <p>9. ~ 15. (생략)</p> <p>제15조(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3조(적용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순직</u> -----</p> <p>-----</p> <p>5. ~ 7. (현행과 같음)</p> <p><삭제></p> <p>9. ~ 15. (현행과 같음)</p> <p><삭제></p>

사 천 시 공 보

제735호

관 련 법 규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